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12일, 김남근의원 등 34인

나. 회 부 일 자: 2025년 11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5.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 폐기)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11. 20.)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남근의원)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AI 플랫폼 서비스와 같이 수만 개의 기술을 결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21세기 산업에서는 어느 한 대기업의 기술만으로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기술을 모아 기술집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가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재·부품·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유용하여 제3자를 통해 저가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러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혁신 및 수평적 네트워킹 생태계 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기술탈취·유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제25조제2항),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재판에 이를 현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처럼 기술탈취 소송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21세기 첨단산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라

는 전근대적 갑을관계 관행이 여전히 한국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등 대륙 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 보존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하였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대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